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59106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REDACTED]

[REDACTED]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REDACTED]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23. 11. 23.

판 결 선 고 2024. 1. 18.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 ([]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8. 21.부터 2018. 9. 3.까지 [] 수협 소속 []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8. 9. 28. [] 병원에서 '폐기종, 기관지염, 급성 상악동엽(이하 동틀어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9. 29.부터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9. 10. 3. 09:40 침상에 엎드려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당시 자발호흡이 없고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아니하여 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으나,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10:4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이 '심정지'로, 선행 사인이 '불상'으로 기재되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승선 중 직무 외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3개월 내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4.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지역본부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7. 2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던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고, 2018. 9. 29.부터 입원치료를 시작하여 수일 후인 2019. 10. 3.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한 결과에는 이 사건 질병이 일부라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어선원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어선원재해보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승선 이력

망인은 2000. 1. 1.부터 2018. 9. 28.까지 총 255회에 걸쳐 출항 및 입항을 하였다.

2)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3. 9. 16.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2015. 3. 4. 상세불명의 수단으로 확인된 공동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폐결핵
- 2015. 3. 10. 상세불명의 기관지 폐렴
- 2015. 4. 14. 상세불명의 기관지 폐렴
- 2015. 4. 28. 상세불명의 기관지 폐렴

- 2015. 5. 4. 상세불명의 수단으로 확인된 공동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폐결핵
- 2015. 5. 11. ~ 2015. 9. 7.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공동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폐결핵
- 2018. 9. 29. 상세불명의 폐기종, 폐의 진단영상검사상 이상 소견

3) 의학적 견해

가) 부검감정서

1. 허파 표면의 점출혈, 암적색 유동성의 심장혈액 등 급사의 일반적인 소견을 보는 점,
 2. 양쪽 허파에서 폐기종 소견을 보는바, 변사자가 한 달 전부터 기침 증상 심해져 병원 내원하여 검사 후 폐기종 진단 하에 약물치료 시행하였다고 하는 의무기록의 내용에 배치되지 않는 소견이나, 부검소견 및 의무기록의 내용에 따른 변사자의 경과를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병변을 변사자의 사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3. 심근의 조직학적 검사에서 허혈성 변화를 보나, 부검소견에서 심장동맥경화 등 이러한 심근의 변화를 초래할 만한 특기할 심장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을 보지 못하는바, 이것만으로 심장 병변을 변사자의 사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4. 그 밖에 실질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해부학적 질병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5. 기도 안 및 양쪽 허파기관지 안에서 갈색 빛을 띠는 점액성 이물을 보나, 그 양이 많지 않고, 심폐소생술의 과정 중에 위 내용물이 역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이 변사자의 사인을 기도폐색성질식사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6. 외표 및 내부검사에서 의료행위에 의한 손상 외에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해부학적 손상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7. 혈액과 위 내용물 검사에서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 외에 특기할 독극물 및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0% 미만이며, 혈액에서 베타-히드록시부틸레이트와 아세톤이 낮게 검출되고, 혈중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농도가 낮게 검출되는 점,
 8. 눈유리체액의 임상화학검사에서 법의학적으로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대사 이상이나 전해질 이상의 근거를 보지 못하는 점,
 9. 수사기록 및 의무기록,
- 등을 종합할 때, 부검 소견에서 급사의 일반적인 소견을 보는 외에는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해부학적 질병, 손상, 중독 등의 소견을 보지 못하는 바 이 변사자의 사인은 불명임.

나) 이 법원의 [REDACTED] 협회(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속

탁 결과

- 망인의 과거 진단병명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2018. 9. 29.경 진단받은 이 사건 질병이 의학적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망인을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망인은 40갑년의 흡연력(하루 1갑 반 흡연)의 위험인자 노출력이 있는 40세 이상의 성인으로 기침, 호흡곤란이 1달 전부터 있었으므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의심됩니다. 그러나 진단은 영상학적 및 해부학적 소견인 폐기종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폐활량 검사가 실시되지 않아 확진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망인은 임상적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의심되고 가능성성이 높아 진단적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한 상태입니다만 확진까지는 안 된 상황입니다.
-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질병 등 호흡기질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망인은 흡연을 지속하였으나, 호흡곤란으로 일상 활동의 장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연령도 50대이며, 동반 질환 진단이 확인되지 않고, 흉부 CT 결과, 폐 부검 소견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망의 원인이 될 정도로 심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기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급성 악화가 되는 경우 중환자실 입실 및 기계환기 치료까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감기와 같은 호흡기 감염이 동반되면서 급성 악화가 발생하여 급격한 호흡곤란, 기침의 악화를 보이며, 가래의 양이 증가하고 화농성 변화를 보이며 심한 경우 호흡부전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임상 경과를 보이지 급사(돌연사)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종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폐 기능의 악화가 심해지면 폐의 가스교환 기능이 떨어져 저산소증, 고탄산혈증이 나타나기도 하며, 심장 기능의 저하를 동반하게 되는 폐성심이 발생할 수도 있고, 결국 호흡부전 및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과는 수개월, 수년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망인과 같이 심한 폐기능 저하를 의심하기 어려운 상태의 환자가 급사하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망인과 같은 만성 호흡기 환자가 수면 중 동반 질환 등의 원인으로 심정지 또는 급사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망인과 같은 호흡기 질병 정도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임상적으로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일상 상황 및 허파(폐) 부검 결과를 보면 호흡기질환보다는 심정지 또는 급사의 다른 원인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옳은 판단으로 볼니다.
- 망인과 같은 만성 호흡기 환자가 이 사건과 같이 입원 중 침상에서 엎드린 채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 원인으로 이 사건 질병 등 호흡기 질환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로 판단되는지
 - 5/100입니다.

[인정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REDACTED] 협

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관련 법리

가)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은 중앙회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기간의 최초 3개월 이내의 비용만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란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다가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774 판결 참조).

나)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어선원 등의 재해'에 관하여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입은 사망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어선원 등의 재해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질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은 2018. 9. 28. [REDACTED] 병원에서 이 사건 질병을 진단받은 후 다음날 입원하였고, 당시 망인을 진료한 주치의는 수사기관에서 '초진 시 엑스레이와 CT촬영 등을 근거로 폐기종을 확인하였으나, 입원할 정도는 아니어서 일주일치 약을 처방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보호자가 망인에 대한 입원치료를 희망하여 입원을 한 후 약물 등 치료만 하였으며, 망인이 갑자기 사망한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망인은 2018. 9. 29.부터 2018. 10. 3.까지 짧은 입원기간 중 3회 외출하였는데, 입원 첫날인 2018. 9. 29. 13:00 외출하였다가 19:40 귀원하였고, 2018. 10. 1. 18:50 외출하였다가 21:21 귀원하였으며, 2018. 10. 2. 17:00 외출하였다가 20시에 귀원하였다. 망인은 사망하기 2시간 30분 전인 2018. 10. 3. 07:05경 간호사에게 기침증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이 사건 질병에 따른 증상은 약물치료로 호전되는 중이었고, 망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급사에 이를 만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법원 감정의는 '망인은 폐기능 검사를 실시한 적이 없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확진되지 않은 상태이나, 설령 망인에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급성 악화할 경우의 임상 양상은, 호흡기 감염 동반, 급격한 호흡 곤란, 기침의 악화, 가래의 양 증가 및 화농성 변화, 호흡 부전으로 나타

나지, 망인과 같이 급사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증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폐기능 악화가 심해지면, 폐의 가스교환 기능이 떨어지고, 심장 기능의 저하를 동반하는 폐성심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호흡 부전 및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나, 이러한 경과는 수개월, 수년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므로, 망인과 같이 심한 폐기능 저하를 의심하기 어려운 상태의 환자가 급사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이 사건 질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또한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에 따르더라도, 망인의 폐기종을 망인의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해부학적 질병, 손상, 중독 등의 소견을 보지 못하여 망인의 사인은 불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학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가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라) 원고는 2006. 5.경 작성된 논문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사망 원인 - 한 3차 병원 연구'의 내용 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 중 사망한 총 28명의 환자에게서 사망원인을 확인한 결과, 심장 관련 사망이 5명(17.9%), 급사한 경우가 3명(10.7%)으로 집계되었다'는 부분을 근거로 하여,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일환이고 망인이 급사한 결과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기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논문에 따르더라도, 해당 연구는 3차 병원에서 진료하는 중증도가 비교적 심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이 주로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과 사망하기 전 의무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중증도가 심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논문을 망인의 사망 원인을 추단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로 볼 수는 없다. 법원 감정의도 '위 논문은 한 기관에서 제한된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진행된

연구로서 근거 수준이 낮고 제한점이 있다. 해당 연구는 현황을 조사하여 보고한 논문이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논문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평가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별지

관계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어선원등의 재해”란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이하 “어선원등”이라 한다)가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입은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② 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요양급여의 지급 등) ① 중앙회는 어선원등이 승무(乘務) 중[기항지(寄港地)]에서의 상륙기간과 승하선(乘下船)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어선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제23조의6에 따른 재요양을 포함한 요양기간의 최초 3개월 이내의 비용만 해당한다)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② 어선원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어선원등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제23조의6에 따른 재요양을 포함한 요양기간의 최초 3개월 이내의 비용만 해당한다)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③ 어선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유족급여) ①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

② 중앙회는 어선원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 다만, 그 어선원등이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장례비) ① 중망회는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하거나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제1항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2(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본입니다.

2024. 1. 22.

서울행정법원

법원사무관 [REDACTED]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
함에 유의).